

2026년 임시 제17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

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제2026-177호

2026년도 임시 제17회 해기사 시험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31일
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

1. 시행 직종, 등급 및 시험방법

가. 시행 직종 및 정원

구 분	시험일	시행등급 및 직종	인원(명)	입실시간
17회	2026. 9. 16.(수)	2·3급 항해사(상선, 어선, 교류) 및 기관사	45	09:30
		6급 항해사(상선, 어선, 교류) 및 기관사, 소형선박조종사	45	13:30

※ 2부제 시행 (오전, 오후 각 45명)

※ 시험장소 등의 상황에 따라 취소 및 회별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

나. 시험장소 : 국립군산대학교 해양1호관 다목적전산실

(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소재)

다. 시험방법 : CBT(Computer Based Test, 컴퓨터 시험), 시험문제 비공개

※ PBT(OMR 답안 작성) 시행 시 시험일 전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지, SMS로 안내

2. 응시원서 접수

가. 회별 접수기간

구 분	접수일	시행등급 및 직종
17회	2026. 9. 3.(목) ~ 9. 8.(화)	 <u>접수 시작일 10:00부터 접수 마감일 18:00까지</u> ※ 정원제 운영으로 접수기간 중 선착순 마감, 정원이 마감된 경우 접수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접수 불가, 접수 기간 중 취소자 발생 시 추가 접수는 가능

나.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만 가능(정원 내 선착순 마감)

-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
-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
➔ 원서 접수 ➔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 ➔ 해기사 ➔ 원서 접수

다. 응시원서 작성

- 인터넷 접수는 응시자 정보 및 사진을 등록하셔야 합니다.
- 사진 1매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, 탈모의 가로 3cm×세로 4cm 파일)
- 휴대폰 번호를 맞게 입력해야 시험 정보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1. 인터넷(모바일 등) 접수는 접수 요건의 선택이 본인의 선택이며, 접수내용의 수정 및 정정이 제한되고 접수오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 2.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(2012.10.31.)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, 응시원서만 제출
 - ▶ 필기시험 전부면제(면접응시) 또는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면허발급 신청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한번만 제출
 - ▶ 단,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
- ☞ 면제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**
- ※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등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**

라. 응시 수수료

구분	2급	3급	6급	소형선박조종사
금액	15,000원	14,000원	13,000원	10,000원

3.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

구분	합격자 발표일시	결과 확인방법
17회	시험시행일 17:00	○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http://lems.seaman.or.kr) 접속 ➔ 합격자발표 ➔ 시험응시이력 및 결과 ➔ 합격 정보 확인 ○ 단문자(SMS) 서비스 : 시험응시자 전원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※ 원서접수 시 휴대폰번호 등록자에게 전송

4.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 안내

가.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

-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
➔ 원서접수(접수확인 및 취소) ➔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 ➔ 접수 취소
-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.

나.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

-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
➔ 원서접수(접수확인 및 취소) ➔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 ➔ 접수 환불
-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.
- 시험 종료 후 영업일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.

※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1.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2.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였거나,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시간적 또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및 교통비 취소 수수료 등을 원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3.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: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
4.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
5.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
6.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
 - 6-1.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·(외)조부모·형제·자매, 배우자,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
 - 6-2.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)
 - 6-3.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대상자로 판정(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국가(공공기관)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)
 - 6-4.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(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)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)
 - 6-5.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)

5. 결격사유

[선박직원법 제6조]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.

1. 18세 미만인 사람
2.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(「수산업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)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. 응시자 주의사항

- 가.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(일부과목 및 면접응시자 제외), 최종 시험합격 후 면허교부 신청 시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 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접수 완료 후 응시표에 표기되는 **응시직종, 시험형태, 시험일시 등을 반드시 확인**하고,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**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선원수첩,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)을 반드시 지참**하셔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시험당일 시험실시와 관련한 안내가 있으므로 **입실시간은 반드시 준수**하셔야 합니다.
- 마. 응시자는 대기시간 및 시험시간 중에 **전자기기 및 통신기기**[휴대용 전화기, 스마트워치·스마트센서·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(이어폰 포함), 태블릿,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과일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통신·결제기능(블루투스 등)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]을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- ☞ 시험 시작 전에 전자·통신기기 등의 전원을 끄고 개인소지품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전자·통신기기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(퇴실) 또는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바.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, 시험시행 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.

사. 필기시험의 **합격 유효기간**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아. 임시필기시험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

자. 시험 당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기타 참고사항

○ 면제요건 등 사전 확인사항

- ▶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(2012.10.31)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, 응시원서만 제출
- ▶ 필기시험 전부면제(면접응시) 또는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면허발급 신청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한번만 제출
- ▶ 단,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.
- ☞ **면제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.**
- ※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등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

예시1)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 인정 여부

-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함정경력은 2011.02.14. 이후부터 승무경력 인정

예시2) 교류시험 응시자는 면허 소지자에 한해 시험 접수 가능

- 어선 3급 면허 소지자 → 상선 3급 교류시험 응시

예시3) 통신사 경력자 → 항해사 시험 중 필기 과목면제(법규, 영어, 전문)

- 통신면허를 받고 6년 이상 통신사 경력 소지자

예시4) 승무경력기간 계산

선박직원법시행령 제7조(승무경력기간의 계산)

- ①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,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,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또는 능력평가팀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종합민원실 : 콜센터 ☎ 1899-3600, FAX 051-624-9081

(주소) 49111,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

- 능력평가팀 : ☎ 051-620-5831~6, FAX 051-626-7556